

식품업계의 제조물책임법 도입

기업활동 고려한 실시 요망

송성완 / 한국식품공업협회

1. 문제제기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급변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비생활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는 현저하게 증가하여 왔다.

그 동안 이에 대한 법제의 정비, 거래관행의 개선, 교육, 홍보 등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이 고도화, 기술화되고 유통과정의 복잡화 현상이 더욱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존의 과실책임이나 계약책임으로는 결함제품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결함제품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동 법은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의 제품안전 노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동 법은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자본규모나 인적자원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시 고려사항 및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입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제조물책임법 도입시 고려사항

2-1. 제조물의 면책사유

기업이 모든 제품결함에 대하여 피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연구개발활동의 위축, 기업경영의 불안전성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 있다.

이는 기업이 제품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기타요인에 의해서 제품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 제정시 제품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중에서 신기술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결함이나 법률이 정하는 강제 기준

을 준수하였는데도 발생한 제품결함, 그리고 완성품의 설계 또는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따른 물품제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결함 등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함으로써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기업경영활동의 위축을 완화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2. 손해배상액의 범위

기업의 존폐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제조물의 동일한 결함으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해배상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동 법을 적용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최저금액설정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조자에 대하여 제품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외에 추가적으로 별금적 성격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2-3. 제조자 책임기한의 제한

제조자가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초안에서는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까지로 제한하였으나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대부분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기한도 이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조자의 책임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4.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시기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시기에 대해서 소비자와 제조자 상호간에 상당한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경우 동 법을 즉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에서는 법 제정의 취지는 좋으나 IMF관리체제라는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개선된 이후에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의 경우는 수출보다는 내수위주인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요 항목별 입법내용

3-1. 목적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2. 제조물의 범위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제조물 책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물의 범위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손을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즉 제2차 산업에 관계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

며,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생산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공이라 함은 재료에 공작을 하여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식품의 조미, 냉동, 건조 등이 가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혀 이러한 의미의 제조 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천연적인 산물, 즉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이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전기 가스 등은 포함하고 있다.

3-3. 책임주체

제조물 책임의 주체는 완성품의 제조자와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는 물론 제조물을 수입한 자를 제조자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조물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및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하여 제조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판매자 등 공급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3-4. 결함의 정의 및 판단기준

동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안전성은 당해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전성 및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위험과 관련있는

안전성을 의미한다. 한편 결함의 판단기준은 당해 제조물의 성질 및 표시, 사용상태, 유통된 시기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함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3-5. 면책사유

동 법은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일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이는 동 법에 기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 이지 민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배상책임까지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자의 면책사유는 기본적으로 EU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자가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예컨대 제조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조물이 도난당하여 그 후에 사고가 발생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것은 결국 제조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둘째,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상의 강제기준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조물의 제조가 위법이 됨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셋째,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본 면책사유는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한 것이다.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 기술지식의 수준으로는 그 제조물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

한 위험을 말한다.

넷째,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이는 부품제조자도 자기가 제조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부품이 조립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거나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게 된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보호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6. 소멸시효

권리관계를 무한정, 불확정의 상태로 두는 것은 피해자와 제조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제조물을 유통에 둔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 중에 제조물의 사용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7. 시기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제조자가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4. 결론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논란은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제조물책임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동 법의 제정에 대비하여 기업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활동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소송의 증가 등 여러분야에서도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금액의 과다, 제조 공정 개선에 따른 비용과다, 제품결함 원인중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규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이를 입증시켜야 하는 부담 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경비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피해구제 소송의 증가, 재판 이외의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시기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입법추진을 추진하여야 하며, 최소한 IMF 관리기간 동안은 실시시기를 유보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 법이 원활이 운영되기 위한 제조물책임보험의 활성화, 소송외적 분쟁해결방법 및 절차의 개선, 제품의 결함판정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공공시험검사기관의 설립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ko]